

(2) 양형위원회의 위원장은 15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법관 4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양형기준의 설정 및 공개(법 제81조의6 신설 및 부칙 제2항)

(1)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되, 동 위원회가 다양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형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하지 아니함.

(2) 양형기준은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양형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다. 양형기준의 효력(법 제81조의7 신설)

(1)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되, 법관으로 하여금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함.

(2) 법원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되,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기로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2007년 1월26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김성호**

●법률 제8271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로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2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 또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계속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제58조의17의 제목 중 “상법규정”을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무법인(유한)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53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제58조의31의 제목 중 “민법규정”을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무조합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제77조제3항 중 “會則에 위반하거나 公益을 해한다고”를 “회칙에 위반된다고”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인하여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연수교육의 방법·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86조제3항 중 “會則에 위반하거나 公益을 해한다고”를 “회칙에 위반된다고”로 한다.

제9장의 제목 “法曹倫理協議機構”를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로 한다.

제88조 및 제8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9조(윤리협의회회의 기능 및 권한) ①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 및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
 -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 ②윤리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장에 제89조의2 내지 제8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윤리협의회 구성) ①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②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89조의3(윤리협의회 조직·운영 및 예산) ①윤리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인과 사무기구를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인,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인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정부는 윤리협의회 업무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윤리협의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윤리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를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윤리협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에 기재사항·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특정변호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9조의6(수임사건 처리결과 등의 통지) ①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목록을 관할 법원·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현황 또는 처리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의7(비밀누설의 금지) 윤리협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①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 ②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93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의 규

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한다.

- ②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7조의2 내지 제9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및 제58조의18의 규정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 ②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의5(이의신청) ①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

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懲戒開始의 請求를 받은 날”을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懲戒開始의 請求가 있는 때”를 “징계개시의 청구가 있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①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징계혐의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 또는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8조의3(제척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8조의4(징계의결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90조제4호의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98조의6(징계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하지 못한다.

제99조 중 “大韓辯護士協會의 長은 辯協懲戒委員會에 대하여 懲戒開始請求를 한 때와”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第97條第2項의 懲戒開始申請을 한 地方檢察廳 檢事長”을 “징계개시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를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위임)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 협회가 정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제117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第1項”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第2項”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第3項”을 “제4항”으로,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第3項”을 “제4항”으로 한다.

2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 또는 대리한 자

7.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刑法”을 “「형법」”으로,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관한法律”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6조 단서 중 “民法”을 “「민법」”으로 하며, 제45조제1항 중 “法源組織法”을 “「법원조직법」”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단서 중 “법원조직법”을 “「법원조직법」”으로 하며, 제58조제1항 중 “商法”을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公證人法”을 “「공증인법」”으로 하며, 제58조의6제1항 중 “법원조직법”을 “「법원조직법」”으로 하고, 제58조의9제1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8조의22제1항 중 “법원조직법”을 “「법원조직법」”으로 하고, 제72조제2항 중 “民事調停法”을 “「민사조정법」”으로 하며, 제100조제4항 중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

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17 및 제58조의31의 개정규정 중 징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③(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입자료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된 자부터 적용한다.
- ④(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변호사법 개정이유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로부터 수입자료 등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징계종류 중 영구제명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검사징계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규정하며, 징계시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함으로써 변호사징계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자료제출 등(법 제11조제2항 신설)
 - (1) 법관·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와 관련되더라도 징계 전에 퇴직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음.
 - (2) 대한변호사협회에 둔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3)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변호사 광고규제의 완화(법 제23조제2항, 법 제113조제1호 신설)

- (1)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된 변호사광고 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사건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병폐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2) 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신설하되, 법률로 금지된 광고를 제외하고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 또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3)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의 금지(법 제29조의2 및 제1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1)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호

또는 대리활동을 하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내사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경우가 있음.

- (2) 변호사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에 대하여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함.
- (3)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변호사단체 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요건 축소(법 제77조제3항 및 제86조제3항)

- (1)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단체의 총회결의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총회결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요건 중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법령 또는 회칙위반'만 존치함.
- (3)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향상이 기대됨.

마. 변호사 연수교육 의무화(법 제85조, 법 제117조제2항 신설)

(1) 변호사에 대한 연수교육은 변호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참가율이 저조한 편이고 지방간 편차도 큼.

(2)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과목에는 법조윤리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연수교육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3) 변호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변호사의 자질향상 뿐만 아니라 윤리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법조윤리협의회 설치(법 제88조 및 제89조, 법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 신설)

(1)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법조윤리협의기구 설립이 필요함.

(2)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실태 분석과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동 협의회에 3인의 간사와 사무기구를 두며, 정부는 법조윤리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3) 법조윤리와 관련한 종합적 대책 수립과 감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법 제89조의4 내지 제89조의6 신설)

(1) 법관·검사 등 공직 출신 변호사가 사건처리 또는 사건수임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서거나, 일부 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관련한 비리로 인하여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됨.

(2)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에 대하여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법조윤리협의회

의 검토 결과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3)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고 법조브로커를 근절함으로써 법조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아. 변호사 징계제도의 정비(법 제91조제1항제1호, 법 제92조의2 신설, 현행 제97조제1항 단서 삭제, 법 제97조의2 내지 제97조의5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6 신설)

(1) 현행 영구제명 요건이 2회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지나치게 엄격하고, 의뢰인 등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원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 「검사징계법」을 준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변호사 영구제명 요건을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과실범은 제외)로 완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며, 의뢰인 등의 수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원·재청원권을 인정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검사징계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규정하며,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

서 3년으로 연장함.

(3)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의 퇴출, 대한변호사협회의 실질적인 조사권 행사, 변호사 징계절차에 국민의 참여기회 제공 등으로 변호사 징계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자. 징계개시청구에 관한 보고의무 폐지(법 제99조)

(1)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한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징계결정에 대한 보고만으로도 징계권 감독이라는 행정목적 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2) 징계개시 청구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징계결정에 대한 보고의무만 존치함.

(3)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신장이 기대됨.

<법제처 제공>